

제 호

입목·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증

허가 받은 자	성명		생년월일					
	주소 (전화번호:)							
허가상황	토지 소재지		지번		지목		면적	m ²
	허가내용							
	행위종류	면적	수량	방법	용도	기간	비고	
		m ²					~ (개월간)	

「사방사업법」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,
특별자치도지사,
시장·군수·구청장
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

직인

유의사항

-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에 착수해야 합니다.
- 허가구역 인근의 잘 보이는 곳에 허가사항에 관한 입간판을 설치하고, 위험한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위험표시를 해야 합니다.
-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